

< 갑질행위자 처분 현황 >

○ (대상기간) 2022. 4월 ~ 2023. 6월

연번	유형	징계종류	처분일	징계사유
1	비인격적 대우	불문경고	2022. 7. 4	○ 직원들 앞에서 연가 사용에 대해 면박을 주고 폭언을 함
2	비인격적 대우	견책	2022. 7. 4.	○ 직원에게 폭언, 욕설 및 사직서 강요 등을 함
3	비인격적 대우 법령 등 위반	감봉 2월	2022. 8. 9.	○ 집배원들에게 고성, 욕설을 하고 본인 배달 우편물을 대리 배달시킴
4	비인격적 대우	해임	2022. 8.24.	○ 소속 직원에 대한 욕설, 막말 및 퇴사를 종용하는 등 업무 불이익을 줌
5	비인격적 대우	감봉 2월	2022.10.14.	○ 휴일에 사적 만남 요구, 코로나 백신접종을 하지 않았다고 질책, 모욕적인 발언 등을 함
6	비인격적 대우 법령 등 위반	감봉 1월	2022.11. 9.	○ 소속 직원에게 직무 범위를 벗어난 부당한 지시 요구, 욕설 및 비하 발언 등을 함
7	비인격적 대우	견책	2022.12.20.	○ 소속 직원에게 비인격적 발언과 욕설로 모욕감을 줌
8	사적이익 요구	감봉 2월	2022.12.26.	○ 소속 직원에게 사적인 일을 지시하고 차량 수리 비용을 부담시킴
9	비인격적 대우	감봉 1월	2023. 1. 6.	○ 소속 직원에게 자로 때리는 등의 폭행, 막말 및 부당한 업무 지시를 함
10	사적이익 요구 업무 불이익	강등	2023. 4.17.	○ 소속 직원에게 사적 노무 요구, 부적절한 인사 발언 및 부당한 사무분장 변경 지시 등을 함
11	비인격적 대우	감봉 1월	2023. 6. 1.	○ 소속 직원의 먹살을 잡고 흔드는 행위 및 직무를 벗어난 부당한 지시를 함